

물품구매사양서

제1조(적용)

본 사양서는 기술지도선(해양8호)의 주기관 정비에 필요한 수리부품 구매계약 건에 적용한다.

제2조(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주기관(캐터필라(Caterpillar) 3196, S/N : 2XRO1197)의 사양과 부품의 구체적인 물품 명세를 반드시 숙지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 주기관의 형식에 적합한 고유 순정부품이어야 한다.
- ② 각 부품의 부품번호는 주기관 제조사의 부품번호이며 지정된 부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제작사에서 업그레이드되어 개조되거나 변형된 부품은 주기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한 부품으로 인정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 기일을 준수하여 해당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일괄납품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할 경우 납품 2일전에 발주기관의 검사관에서 납품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품질보증 및 규격)

-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제작사의 순정부품 확인서(순정품 인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부품의 부식, 변형, 파손 방지를 위해 기관 부품의 형상,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이 쉽도록 포장하여 납품하고 포장지에 품명, 부품번호(규격), 납품업체, 수량, 납품 일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납품되는 모든 기관 부품은 장비 규격에 맞는 순정부품이어야 하며, 부품 규격이 다르거나 우리 연구소에서 지정한 부품이 아닐 경우, 즉시 규격지정한 부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③ 납품검사(수) 후 발견치 못한 불량부품이나 규격이 다른 부품(조립이 되지 않거나 기관의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등의 부품)이 발견될 시, 납품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④ 부품 납품 후 품질보증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기타)

- ① 제작사 부품번호 변경으로 기종, 품명, 부품번호 상이 등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후 서로 의견 불일치 시는 발주기관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